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132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선박임차인)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과태료 대상자

소유자명(선박임차인)	법인번호	주 소
에스티오차터링*** (주)	1801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 ***호(우동, 센텀티**)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을 법에 맞게 보고하지 않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선박명	과태료	관련 법령
에스티오 아젤리아	300,000원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4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6의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별표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
에스티오 로벨리아	300,000원	

4.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

-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처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안내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2026. 8. 14.(금)까지 과태료 부과 기관(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 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 064-720-2639)으로 연락주셔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과태료 부과 기관(064-720-2639)으로 문의 바랍니다.